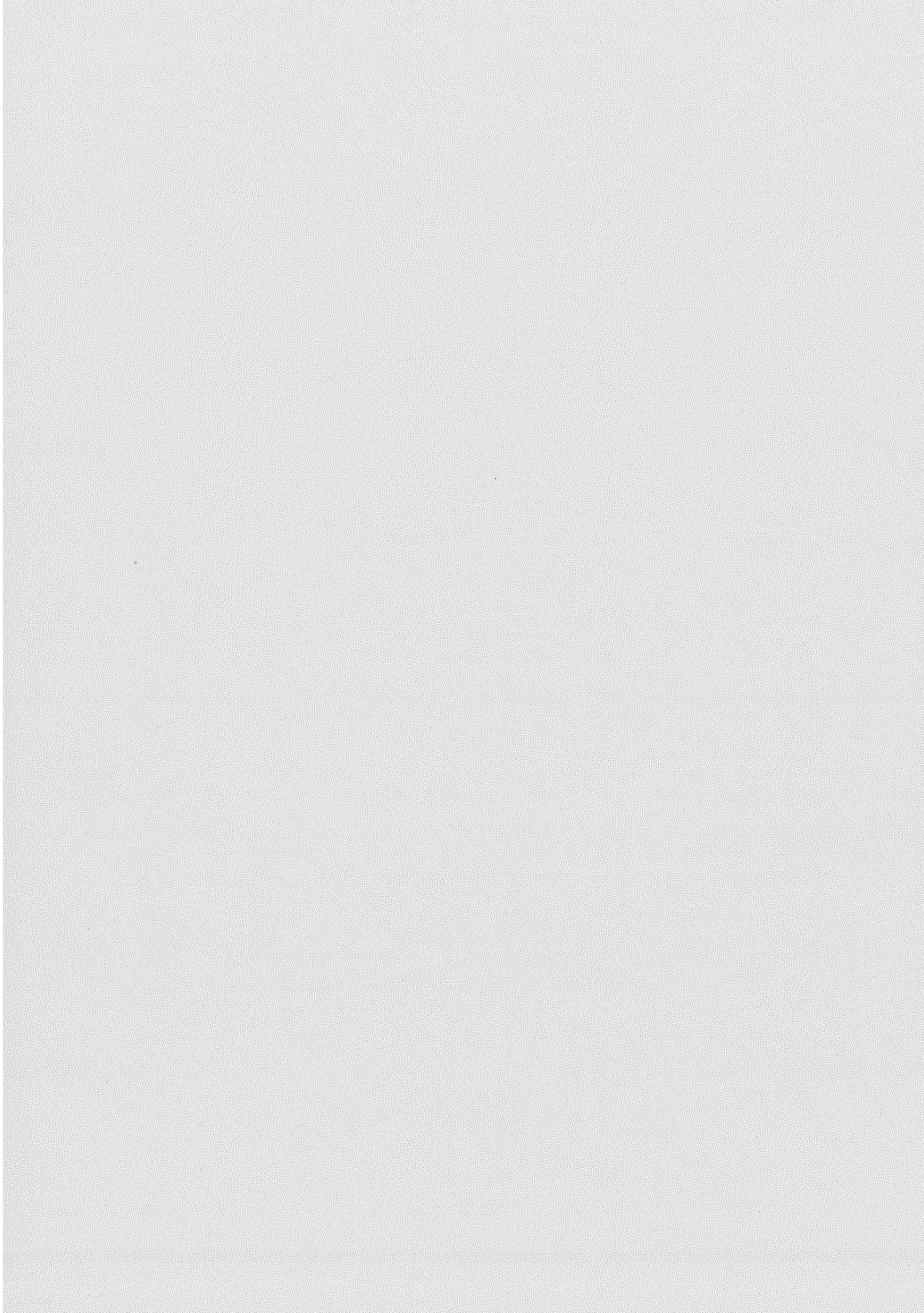


第117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2000·8·통권 제70호

- I. 개회식3
- II. 제1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5
- III. 제1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9
- IV. 부 록
 - 1. 의사일정 11
 -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13
 - 3.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
조례안 19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8월 7일(월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117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유근영)

(11시 00분 개식)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사담당 유근영

(11시 02분 폐식)

지금부터 제1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
사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8월 7일(월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1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기수위원 외 6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기수위원 외 6인 발의)

(11시 02분 개의) 히 반갑습니다.

● 의장 조일환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평안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

히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이 매우 바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중에는 두 번의 임시회를 개최하여 최근의 교육현안 문제에 대한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증지를 모은 결의문 2건을 채택하여 관계부처에 송부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8월중에도 이번 제117회 임시회를 비롯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육계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고, 또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널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옴)

1. 경과보고

(11시 04분)

● 의사과장 이상기

의사과장 이상기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 7월 31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 전원의 서명 발의로 교육위원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고 2000-9호로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화기 의결안건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반대 결의문은 같은 날짜로 중앙 관계부처 및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위원 발의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이상기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2. 제1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06분)

● 의장 조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제1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8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제1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의사일정안 : 별첨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

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
조례안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교육위원회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관한수
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모두
위원 발의된 안건이므로 두 안건을 일괄 상
정하겠습니다.

전체 발의위원을 대표해서 이기수 부의장
님께서서는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발언대로 나눔)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 전원의 찬성 서명으로
발의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8일자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
무의 관리부서가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되어 의사과장의
분장사무에 명시되었던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기 위하여 이 개
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근거, 조례안, 신·

구 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 참 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
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 별첨2

(끝에 실음)

다음에는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
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
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8일자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이 개정되고, 2월 28일자로 교육위원및교육
감선출등에관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 규
정에 근거하여 제정 시행되어 왔던 동 조례
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폐지근거, 조례안 및 관
계법령 발췌서 등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
러분!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모두 동료 위원들
께서 전원이 찬성 서명하여 발의한 의안이
니만큼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참 조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
무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

지조례안 : 별첨3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
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
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
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수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부의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
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은 이상일 위
원님과 이충원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
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의장 조일환, 부의장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 출석공무원 : 11명

부교육감 유선규,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 정호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준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시설과 오형균.

※ 부 록

▶ 의사일정안 : 별첨1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2

▶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별첨3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8월 8일(화요일) 11시 34분

議事日程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기수위원 외 6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기수위원 외 6인 발의)

(11시 34분 개의)

● 의장 조일환

오늘 중요한 소프트웨어 정보화 전시회 참석을 하시느라고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시고 이제 의회 개회 준비가 돼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

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의장 조일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 2건의 조례안은 교육위원님들 전원의 찬

성으로 서명 발의된 안건이기 때문에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신 이기수 부의장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1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폐회)

○ 출석위원 : 7명

의장 조일환, 부의장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 출석공무원 : 11명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교육정보화과 채수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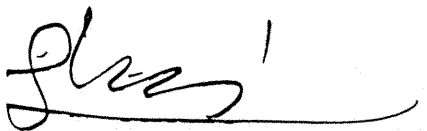
총무과장 신춘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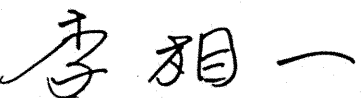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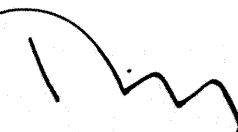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시설과 오형균.


제1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0. 8. .

의 장 조 일 환 

위 원 이 상 일 

위 원 이 충 원 

의사국장 김 성 기 

(별첨1)

議 事 日 程

第117회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0. 8. 7. ~ 8. 8.(2 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8月 7日(月) (10:30) (11:00)	<p>□ 懇談會 : 教育委員室</p> <p>□ 開會式</p> <p>[第1次 本會議 開議]</p> <ol style="list-style-type: none">제1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사회)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2000. 8. 7. ~ 8. 8.(2 일간)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 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안설명) <p>[第1次 本會議 散會]</p>	
8月 8日(火) (11:30)	<p>[第2次 本會議 開議]</p> <ol style="list-style-type: none">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 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p>[第2次 本會議 散會]</p> <p>※ 閉 會</p>	

(별첨2)

의안번호	제 117 - 1 호
의 결 년 월 일	2000. . . (제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기수 교육위원 외 6인
발의년월일	2000. 7. 3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17 - 1호
----------	-----------

발의년월일 : 2000. 7. 31.
발 의 자 : 이기수 교육위원 외 6인

1.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 (2000. 1. 28. 법률 제6,216호)으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할·관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의사과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의사과장의 분장사무중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무”를 삭제함(안 제3조제4항).

3. 개정근거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1조제1항

4. 조례안 : 덧붙임

5.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나.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조직) ④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p> <p>1. (생 략)</p> <p>2. <u>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무</u></p> <p>3.~15. (생 략)</p>	<p>제3조 (조직) ④</p> <p>.....</p> <p>1. (현행과 같음)</p> <p>2. (삭 제)</p> <hr style="width: 80%; margin-left: 0;"/> <p>3.~15.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관계법령발취서

구	신
<p>□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998. 6. 3. 법률 제5,546호)</p> <p>제5조의 3 (선출관리) ①<u>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관리한다.</u> ② (생략)</p> <p>제28조 (교육감의 선출) ①~② (생략) ③<u>제5조제4항 내지 제7항·제9항·제12항·제14항, 제5조의 3 및 제5조의 4의 규정은 교육감 선출에 이를 준용한다.</u> ④~⑦ (생략)</p> <p>제51조 (신설)</p>	<p>□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00. 1. 28. 법률 제6,216호)</p> <p>제5조의 3 _____ (삭제)</p> <p>제28조 _____ (삭제)</p> <p>제51조 (선거관리) ①<u>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사무를 통할·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u> ② (생략)</p>

(별첨3)

의안번호	제 117 - 2 호
의 결 년 월 일	2000. . . (제 회)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
에 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발 의 자	이기수 교육위원 외 6인
발의년월일	2000. 7. 31.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 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117 - 2호
----------	-----------

발의년월일 : 2000. 7. 31.

발 의 자 : 이기수 교육위원 외 6인

1.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 (2000. 1. 28. 법률 제6,216호) 및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이 폐지 (2000. 2. 28. 대통령령
제16,731호)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폐지근거

-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폐지령

3. 조례안 : 덧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 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서

구	신
<p><input type="checkbox"/>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998. 6. 3. 법률 제5,546호)</p> <p>제5조 (교육위원의 선출) ①~⑫ (생략) ⑬ <u>교육위원의 선출공고, 후보자 등록, 교 원단체 선거인 추천방법, 교육위원선거인 명부의 작성 기타 교육위원 선출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⑭ (생략)</p> <p>제28조 (교육감의 선출) ①~⑥ (생략) ⑦ <u>교육감 선출일공고, 후보자 등록, 교원 단체선거인 추천방법, 교육감선거인명부 의 작성 기타 교육감 선출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input type="checkbox"/>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 관한 규정 (1998. 8. 1. 대통령령 제15,858호)</p> <p>제53조 (선출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 비보상) <u>선거사무종사자, 선거인, 투·개 표참관인 및 개표사무원에게는 시·도 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 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input type="checkbox"/>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00. 1. 28. 법률 제6,216호)</p> <p>제5조 _____ (삭제)</p> <p>제28조 _____ (삭제)</p> <p><input type="checkbox"/>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 관한 규정 폐지령 (2000. 2. 28. 대통령령 제16,731호)</p> <p><u>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u></p>